

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1~29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7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금고의 설치 :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
 -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함(안 제8조)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3조 제2항

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중 “농협중앙회 거창군 지부“를 ”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“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내지 제7조(생략)</p> <p>제8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<u>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</u>에 설치한다.</p>	<p>제1조 내지 제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<u>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</u>에 설치한다</p>